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Version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Eco Lab

목 차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4
제2조 (적용 범위).....	4
제3조 (권한).....	4
제2장 구성	5
제4조 (구성).....	5
제5조 (위원장).....	5
제3장 회의	6
제6조 (소집권자).....	6
제7조 (소집절차).....	6
제8조 (결의방법).....	6
제9조 (부의사항).....	7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7
제11조 (통지의무).....	7
제12조 (의사록).....	8
제4장 보칙	8
제13조 (사무국).....	8
제14조 (규정의 개폐).....	8
부칙	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④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였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해당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임기는 동 위원이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5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원장과 위원만 가진다. 단,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각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의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위원회가 재의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통제를

받은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 (사무국)

이사회 담당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Document #: SK바이오사이언스-기본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0/10/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